



신고자 보호



-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·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
-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



-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개·누설 금지



신변보호

-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,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**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**



책임감면

-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·처분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
-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



신고자 보상

보상 |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(최대 30억)

포상 |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(최대 5억)



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
1398 또는 **110**



온라인

-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
방문·우편

-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
국민권익위원회 1층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
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

팩스

- 044-200-7971



-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

※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번호 사단 명단은
'청렴포털→알려드립니다→비실명 대리신고 안내' 참조

-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, 부정수급자의 부정 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



국민권익위원회



국민과 함께 합니다!

**정부지원금
부정수급
근절!**



신고대상

정부지원금을
부정청구한 경우

정부지원금 이란?

법령 등에 따라 정부(지자체)가
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

부정청구의 유형

⑧ 허위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
청구할 자격이 있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
행위

⑧ 과다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
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

⑧ 목적외사용
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
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
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

⑧ 오지급

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

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신고 사례



1. 과학·산업 분야

- 동일·유사한 개발(연구) 계획을
다수 기관에 제출하여
연구개발비를 중복수급
-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와
무관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
등재하여 **연구수당**을 부정수급



4. 교육 분야

- 허위 교사 등록, 급식비 및
특별활동비 목적외 사용 등으로
유치원 보조금을 부정수급
-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공연관람비,
기념품 구입 등으로 **학교환경개선 사업비**를 목적외 사용



2. 창업·고용 분야

-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
서류를 허위로 꾸며 **고용촉진 지원금** 부정수급
- 하지도 않은 외주용역 결과물을
조작하여 제출하거나,
직원인건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
청년창업지원금 부정수급



5. 문화·체육 분야

- 유사한 행사·공연 내용을
다수 기관에 제출하여
문화예술진흥보조금을 중복수급
- 지인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
발급하여 **지역체육행사 지원금**을
부정수급



3. 보건·의료 분야

-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
방법으로 **요양급여비용**을
부정수급
- 진료한 환자를 실제보다 부풀려
등록하는 방법으로 **요양급여 비용**을 부정수급



6. 복지 분야

- 타인 명의로 차량·사업장을
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
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
-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
위장이혼, 사실혼관계 은폐 등
방법으로 **한부모가족지원금**을
부정수급